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

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대상을 개정하고,

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시 기준 개정,

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근거 신설,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,

사업시행구역 외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 시 특례 기준을 신설하여

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마련과

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

본 조례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